세탁소 운영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탁소 운영자]

창업을 꿈꾸시나요? 세탁소는 일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및 소득 향상 등의 영향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현재 전국에 걸쳐 15,000여개가 문을 열었고, 계속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탁소 창업은 상대적으로 소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하고, 쉽게 정기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세탁소의 창업, 운영, 폐업에 이르는 법령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하시고, 현재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절차에 따라 어떤 법령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세탁소 운영자 1
1. 세탁소 창업 준비 4
1.1. 창업형태 선택 4
1.1.1. 창업형태의 선택 4
1.2. 점포준비 6
1.2.1. 독립창업을 위한 기술습득 6
1.2.2. 창업자금 지원정책 확인 7
1.2.3. 점포계약 8
2. 세탁소 개업 12
2.1. 영업신고 등 12
2.1.1. 영업신고 12
2.1.2. 사업자등록 14
2.2. 개업 16
2.2.1. 상호선정 및 홍보 16
3. 세탁소 운영 19
3.1. 매장운영 및 고객관리 19
3.1.1. 위생관리 19
3.1.2. 고객관리(세탁요금 책정 등) 23
3.2. 고객과의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25
3.2.1. 손해배상의 기준 26
3.2.2. 분쟁해결방법 29
3.3. 세금의 납부 31
3.3.1. 종합소득세의 납부 31
3.3.2.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 34
3.3.3. 부가가치세의 납부 37
4. 세탁소 폐업 40
4.1. 폐업신고 40
4.1.1. 폐업신고절차 40

1. 세탁소 창업 준비

1.1. 창업형태 선택

1.1.1. 창업형태의 선택

"세탁업"이란 ?

"세탁업"이란 ?

▪ “세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영업 중 하나로서,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세탁소 창업의 형태

세탁소의 독립 창업

▪ “세탁소의 독립 창업”이란 개인이 만든 브랜드로 입지선정, 인테리어, 세탁서비스 가격, 세탁 전문점 홍보 등 경영의 모든 의사결정을 경영자가 주도하는 형태의 세탁소를 창업하는 것을 말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지원포털 — 세탁소 창업가이드 — 6면).

▪ 영업의 승계

▹ 세탁업 영업자가 그 세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양수인·상속인은 그 세탁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세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그 세탁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

▹ 세탁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 세탁소의 프랜차이즈 창업

▹ “세탁소의 프랜차이즈 창업”이란 독립형 세탁소처럼 매장에서 세탁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물을 모아 지사로 보내면 지사에서 세탁물을 일괄 처리하고, 해당 세탁물을 다시 지역 세탁소로 보내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의 창업을 말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포털, 세탁소 창업가이드, 6면).

▪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의 개념

▹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제공함.

√ 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이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함.

▹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가맹점사업자"란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독립 창업 및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 >

[독립 창업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창업비용이 타 외식 창업에 비하여 적게 든다. 2. 자율 경영이 가능하다.
단점	1. 실패의 위험성이 프랜차이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2. 독자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3. 세탁물 보관과 세탁공정이 동일한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장소가 매우 협소하다. 4. 세탁되어 있는 옷들 속에서 고객 옷을 찾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고객의 불만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5. 프랜차이즈에 비해 광고효과가 낮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지원포털—세탁소 창업가이드—7면>

※ 프랜차이즈 계약 시 유의사항

(질문) 세탁소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체결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서 및 수익률, 가맹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1)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란 다음에 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①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③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⑥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간혹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가맹본부가 있으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제공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주지 않는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받아본 정보공개서와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다르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2) 계약 전 14일간 심사숙고 하세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이는 가맹계약 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법률로 정해 보호한 것이므로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기한 동안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른 가맹점을 방문해 보세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곳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인 문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그러므로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사업진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순이익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또한 이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도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을 결정해야 합니다.

5)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6) 가맹금의 예치

사기성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계약금 포함)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및 제3항). 가맹본부에 가맹금이 지급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① 소송을 제기하거나, ②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분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맹금 지급이 보류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한국공정거래조정(https://www.kofair.or.kr) ㅡ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참조>

※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점포준비

1.2.1. 독립창업을 위한 기술습득

세탁기능사 자격증의 취득

세탁기능사 자격증

▪ “세탁기능사”는 다음과 같이 세탁물을 원형에 가깝게 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ㅡ 국가자격 세탁기능사).

- 세탁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 용제 또는 세제를 사용해 의류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얼룩을 뺄 수 있을 것
- 훼손부분 보수하기 등의 세탁 전 처리작업을 할 수 있을 것
- 물세탁, 드라이크리닝, 풀하기, 다림질 등을 할 수 있을 것

세탁기능사의 수행직무

▪ 세탁기능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 국가자격 세탁기능사).

▹ 천연섬유와 재생섬유 및 합성섬유의 감별작업

▹ 세탁물에 대한 다림질작업

▹ 세탁물에 부착된 오점의 종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거작업

세탁기능사 자격증의 시험실시기관

▪ 세탁기능사 자격증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합니다.

> ※ 세탁소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세탁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지사에서 직접 처리하므로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물 수거와 세탁물 배송의 역할만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
> ※ 세탁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 자격정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

위생교육의 이수

▪ 공중위생영업자에 속하는 세탁소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내용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세탁소 운영을 위한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세탁소 영업과 관련한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세탁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위생교육의 실시기관

▪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사)한국세탁업중앙회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8항 및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 지정」 2.).

위반 시 제재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 ※ 세탁소 영업자의 위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창업자금 지원정책 확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지원에 관한 정보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정책자금 > 에서 참조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창업초기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장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세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 창업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및 이 사이트 < 소상공인 지원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 점포계약

입지의 선정

※ 세탁소 입지 선정 시 참고사항

· 세탁소의 입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좋으나 주요 고객층을 고려해 볼 때 사업장의 존재를 각인 시킬 수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부근이 좋을 수 있습니다.

· 보통 세탁소는 1000세대를 기준으로 창업의 상권범위를 선정하고 있으나 최근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자본 창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큰 수익성을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입지 또한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요가 존재하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타업종 창업에 비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보통 창업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세탁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점포와 차별화를 두기가 쉽지 않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와 같은 지역에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점포가 생길 경우 수익성은 급속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지원포털 ― 세탁소 창업가이드 ― 26면 >

점포계약

개념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계약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계약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권리금에 관한 특약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 권리금의 회수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세탁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하여 권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과 약정하고, 그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권리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의 <임대차의 종료 — 투하 비용의 회수 — 권리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

대항요건의 완비

▪ 개념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참조).

▪ 대항력 발생요건

▹ 임차인은 임차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① 건물의 인도를 받고,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효력

▹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참조).

▹ 임차건물에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우선변제권

▪ 개념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참조).

▪ 우선변제권의 요건

▹ ① 대항요건을 갖추고(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함을 인정한 날짜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참조).

▹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질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가게로 이사를 하려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고(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임차한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로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관할 법원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내려집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및 제281조제1항).

- 효력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본문).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를 가는 등의 이유로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에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항).

※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보호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상가건물 임대차 ㅡ 보증금의 보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세탁소 개업

2.1. 영업신고 등

2.1.1. 영업신고

영업신고

영업신고를 위한 시설완비

▪ 세탁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을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II 제5호).

-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단,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 **세탁소 영업을 위해 필요한 집기**
>
> · 물세탁장비
>
> · 드라이크리닝 장비
>
> · 탈수 장비
>
> · 다림질 장비
>
> · 건조 장비 등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ㅡ 소상공인 지원포털 ㅡ 세탁소 창업가이드 ㅡ 15면 >

영업신고서 제출

▪ 세탁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관할청의 신고내용 확인

▪ 세탁소의 영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할청의 영업신고증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 포함)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 영업신고가 가능한 세탁소의 범위

(질문) 주상복합 건물 내 오피스텔에서 미싱 1대, 다림판 2대, 스팀보일러(30kg/hr), 건조기(용량 : 약10kg)를 갖추고 같은 건물 내 입주민을 상대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과정은 타 지역의 세탁소(영업신고 업소)에서 한 후, 세탁한 세탁물만 오피스텔로 옮겨와 건조와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배달하는 영업형태인데 세탁소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안 됩니다. “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 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세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령해석례, 「공중위생영업(세탁업)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 연도미상 >

영업승계 시의 영업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

▪ 세탁소 영업자가 그 세탁소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상속인은 세탁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의 제출

▪ 세탁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 영업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함(「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2항 참고)

- 영업양도 및 상속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 세탁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

※ 변경신고

· 세탁소 영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주소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본문).

2.1.2.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개념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법령용어검색 참조].

신청기관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전단).

신청서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 그 밖의 참고 사항

▪ 첨부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세탁소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부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참조).

▪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www.nts.go.kr)-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를 참조하세요.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질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

(질문)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의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국세청(www.nts.go.kr)ㅡ국세정책/제도ㅡ사업자등록 안내-자주묻는 질문 답변>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특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

·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건설공사에서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나목)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고용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8항).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9항).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0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0항 단서).

2.2. 개업

2.2.1. 상호선정 및 홍보

상호선정 및 홍보하기

상호의 선정

▪ 상호의 개념

▹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상호선정의 자유

▹ 상인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 상호선정자유의 예외

▹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상법」 제28조).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상법」 제28조).

상호의 등기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 등기절차

상호를 등기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3조제1항, 제18조, 제19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1호).

간판의 설치

▪ 옥외광고물의 개념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일정한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된 것을 포함)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함)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을 말함]·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간판의 표시방법

▹ 간판(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 간판의 설치

▹ 간판(옥외광고물)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

▹ 간판(옥외광고물)은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항).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 광고물 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제3호).

▹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제4호).

※ 간판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설치 전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자치법규에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옥외광고물 설치자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 등의 준비

▪ 홍보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용역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 하는 것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용역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홍보방법

· 전단지 : 소자본 창업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홍보 방법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불특정 다수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전략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를 만들어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마케팅 : 단골 고객의 이용금액, 이용횟수 등의 실적에 따라 보상해 주거나 세탁물을 배달해 주는 등의 특별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POP : POP를 통해 매장의 안내표시와 가격표시, 이벤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ㅡ 소상공인 지원포털 ㅡ 세탁소 창업가이드 ㅡ 58면 >

3. 세탁소 운영

3.1. 매장운영 및 고객관리

3.1.1. 위생관리

위생관리

유해물질관리

▪ 세탁소 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 세탁소 영업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 전단).

▹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 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

√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

√ 불소계 용제

√ 석유계 용제

▹ 세탁소 영업자가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기계를 설치·사용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본문).

√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세탁용 기계의 설치·사용

√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설비를 세탁용 기계와 별도로 설치·사용

▹ 다만, 세탁소 영업자가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리용량의 합계가 30kg 이상의 세탁용 기계를 설치한 경우에만 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설치·사용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단서).

세탁물 관리

▪ 세탁소 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5호).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해야 하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세탁물에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세탁소 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영업제한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탁소 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세탁소에 필요한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 유해물질관리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세탁소 영업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소 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 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7 II 제5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2)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1)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 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2)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사용된 세재·유기용제 또는얼룩제거 약제가 남거나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마.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제4호의2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영업장 폐쇄명령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4항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4항제2호	영업장 폐쇄명령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4항제3호	영업장 폐쇄명령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세탁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탁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4항).

√ 세탁소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세탁소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세탁소 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소 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탁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세탁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세탁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6항).

① 해당 세탁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② 해당 세탁소가 위법한 세탁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③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③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세탁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②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7항).

■ 과징금 처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

▹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제5항,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3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해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

3.1.2. 고객관리(세탁요금 책정 등)

고객관리

[고객관리의 핵심사항]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는 매장 입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세탁요청 속도,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신속성을 우선으로 하여 고객의 서비스 대기시간이 최단시간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종업원교육을 실시하여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고객이 불만 또는 개선점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ㅡ 소상공인 지원포털 ㅡ 세탁소 창업가이드 ㅡ 60면 >

[표준약관의 사용]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5항).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8항).

※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인수증과 약관의 교부

▪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2조제1항).

▹ 세탁소 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탁물 인수일
- 세탁완성 예정일
-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 기타 사항(세탁물 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등)

▪ 세탁소 영업자는 이 약관을 고객들이 열람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약관을 교부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2조제2항).

고객이 회수해 가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인 세탁물의 경우

-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을 고객이 다음의 기간 동안 회수해 가지 않는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 √ 세탁소 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 √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 √ 세탁소 영업자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을 임의처분한 경우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4항).

▪ 구입가격 20만원 이상인 세탁물의 경우

- 구입가격 20만원 이상인 세탁물의 세탁요금 및 보관료 등의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탁소 영업자는 동일한 통지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 세탁요금 등의 청구

-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을 고객이 회수해 가지 않아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통지한 후 고객이 통지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 입증책임

- 고객과 세탁소 영업자와의 사이에서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탁소 영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4항).

세탁요금의 책정

세탁요금의 게시

▪ 세탁요금 및 보관료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소에 게시하고, 해당 고객의 금액은 인수증에 기재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1항).

세탁요금의 책정

▪ 세탁요금은 세탁기본료와 기술료, 수선료로 이루어지며, 기술료와 수선료는 고객이 오점제거나 수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2항 본문).

- 단, “기술료”란 통상적인 드라이클리닝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오점 등을 특수장비나 약품 등을 사용해 제거하는 데 따른 대가를 말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2항 단서).

보관료의 청구

▪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 이후에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세탁소 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물 회수를 통지한 후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3항 전단).

▪ 보관료는 통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되, 일별 보관료는 세탁요금의 3%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3항 후단).

세탁요금의 환급

세탁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 세탁소 영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세탁물이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분실 등으로 고객에게 세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세탁물에 대해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9조제1항).

▪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요금을 선납 받은 경우에는 그 요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9조제2항).

※ 종업원에 대한 대우

- 임금의 지급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 4대 보험의 가입의무

  ·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은 4대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종업원의 고용 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업원 관리

종업원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성과에 대하여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 특성상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특히 이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와 교육 활동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고객응대예절, 세탁물 진열 및 보관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종업원채용은 가족이나 지인의 소개로 검증된 인재를 채용함을 우선으로 하고 전문 인력소개소를 이용하거나 생활정보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공공기관, 전문학원을 통해 구인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채용 시 점포 특성, 규모, 하는 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합니다. 인성에 대한 부문은 면접 시 충분히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제도 및 보상제도가 경쟁업체에 비하여 동등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종업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 설비 등의 안전 점검을 해야 하며, 청결한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지원포털 — 세탁소 창업가이드 — 64면 >

※ 종업원 관리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상공인 지원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고객과의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3.2.1. 손해배상의 기준

세탁소 영업자 및 고객의 의무

<분쟁예방을 위한 표준약관의 사용>

·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5항).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8항).

·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9항).

※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세탁소 영업자의 의무

▪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1항).

▪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완성예정일까지 인수한 세탁물의 세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일까지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고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2항).

▪ 세탁소 영업자는 인수받은 세탁물의 보관유지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3항).

고객의 의무

▪ 인수증을 작성할 때 고객은 성명과 연락처, 세탁물의 구입금액 및 구입일 등에 대하여 세탁소 영업자에게 허위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4조제1항).

▪ 고객은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물 인수 시에 세탁물의 상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경우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4조제2항).

※ 드라이를 의뢰한 옷에 이염 현상이 발생한 경우

(질문) 바지를 구입하여 세탁소에 드라이를 의뢰한 후 받아보니 바지가 다른 색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옷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세탁소 영업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소 영업자가 져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정보) 세탁 후 이염된 바지 배상 요구 >

분쟁발생 시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의 기준

▪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2항 단서).

▹ 세탁소 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의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3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 세탁소 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으나 현실적으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참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세 탁 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1) 하자발생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2) 분실 또는 소실	1) 사업자의 책임 하에 (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2) 손해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Ⅰ. 상품(재화), 제12호 ⑯세탁업>

▹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본문).

▹ 다음의 배상비율표 및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본문).

▹ 다만, 고객과 세탁소 영업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단서).

※ 배 상 비 율 표

배상비율 (%) 내용연수	95	80	70	60	50	45	40	35	30	20	10	
1	0~14	15~44	45~89	90~134	135~179	180~224	225~269	270~314	315~365	366~547	548~	물품 사용 일수
2	0~28	29~88	89~178	179~268	269~358	259~448	449~538	539~628	629~730	731~1,095	1,096~	
3	0~43	44~133	134~268	269~403	404~538	539~673	674~808	809~943	944~1,095	1,096~1,642	1,643~	
4	0~57	58~177	178~357	358~537	538~717	718~897	898~1,077	1,078~1,257	1,258~1,460	1,461~2,190	2,191~	
5	0~72	73~222	223~447	448~672	673~897	898~1,122	1,123~1,347	1,348~1,572	1,573~1,825	1,826~2,737	2,738~	
6	0~86	87~266	267~536	537~806	807~1,076	1,077~1,346	1,347~1,616	1,617~1,886	1,887~2,190	2,191~3,285	3,286~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												

▹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경우에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 다만,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소 영업자에게 세탁의뢰 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합니다.

▹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 상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65%, 하의 35%

√ 상·중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 상의50%, 하의50%

√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릅니다.

▹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등)이 손상된 경우

√ 탈부착용 부속물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 다만,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4항).

※ 세탁 후 수축된 여성 코트에 대한 보상기준

(질문) 2009. 1. 경 595,000원에 구입한 여성 코트를 2010. 10. 25. 세탁소에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제품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보고, 사용기간을 약 665일 정도로 생각한다면 배상비율은 구입대금의 50% 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트의 잔존 가치는 구입대금의 50%인 297,500원 정도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 한국소비자원 ―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세탁 후 수축된 여성 코트 보상 요구 >

손해배상의 감액 및 면책

손해배상액의 감액

-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해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소 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는 세탁소 영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8조제1항 단서).
-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8조제2항).

손해배상의무의 면책

-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한 경우
  -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소 영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본문).
  -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고객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추후 세탁소 영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단서).
-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 다음의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2항).
    - √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 √ 고객이 세탁완성 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기간

-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소 영업자의 책임은 면제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고객의 귀책사유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후단).

3.2.2. 분쟁해결방법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분쟁조정기관에 의한 조정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조정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로서(「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 조정절차
  -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하면 조사 후 ① 고객과 사업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②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해 줍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60조).

▹ 상담신청은 전화(국번없이 ☎ 1372)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를 통해 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신청 후 기다리면 합의를 하도록 도와주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이유 등을 알려 줍니다.

▪ 분쟁조정절차

▹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30일이 지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해 다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제1항).

> ※ **세탁소 영업자의 주의사항**
>
> · 세탁물 인수 시 하자 여부 확인(이상 여부 질의, 확인)
>
> · 오염, 얼룩 등 세탁 후 제거 어려울 시 필수 고지 ⇒ 세탁 선택기회 부여
>
> · 보관증 교부 의무 이행(특이사항 기재)
>
> · 의류의 표기사항 확인 (경험에 의한 세탁 시 피해로 이어짐)
>
> · 세탁 후 하자(얼룩, 찢어짐, 미어짐 등) 발견 시 소비자에게 고지
>
> · 심의 이전(과실 확인이전) 배상 완료 시 사건진행 불가
>
> · 세탁물 관련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
>
> < 세탁물 사고 실태 및 합리적 분쟁해결(사업자용), 23면 >

>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세탁소 영업자를 위한 "세탁물 사고 실태 및 합리적 분쟁해결(사업자용)"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외에 다른 해결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비자분쟁해결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하기

▪ 분쟁조정기관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제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이하 참조).

▹ 세탁소와 관련된 분쟁은 소액이 많을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 중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절차

▹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심판절차의 신청은 일반적인 소송과 같이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 ※ 소액사건심판절차 및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액사건재판 >, < 나홀로 민사소송 ㅡ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세금의 납부

3.3.1. 종합소득세의 납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

과세기간

▪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입니다(「소득세법」 제5조제1항).

과세대상

▪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본문).

▪ 소득세는 거주자의 다음 소득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

▹ 종합소득[「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특례

간편장부대상자

▪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간편장부를 고안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 제외)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간편장부의 기재내용

▪ "간편장부"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

-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

▪ 사업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적자(결손)가 발생할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3항).

▪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기장세액의 20% 가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

- 즉,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단서).

▪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참조).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를 더 부담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단순경비율의 적용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이란 신규사업자나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참조).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단서 참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위 간편장부대상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3천600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종합소득세의 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함)은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소득세율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4만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4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원억 이하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과세신고 및 납부

▪ 확정신고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

▪ 중간예납기간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함)을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결정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후단).

▪ 미납 시 제재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85조제1항).

√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2.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가입기준

▪ 세탁소를 운영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항).

▹ 세탁소(소비자상대업종)와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세탁소의 수입금액만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2항).

▹ 세탁소(소비자상대업종)를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2항).

▹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함)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표시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표시양식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세탁소 영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양식의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2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2조 및 별표).

구분	규격	포함될 문구
의무발행 가맹점	가로160㎜ × 세로100㎜ ± 3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일반 가맹점	가로125㎜ × 세로100㎜ ± 30%	현금영수증가맹점

※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1항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며, 일반 가맹점은 의무발행 가맹점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표시장소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양식의 표지를 다음의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2조).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는 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6항).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 본문).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3조).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금지행위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4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

※ 소비자에 의한 신고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5항).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8항).

√ 신고서(신고자 성명,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 등의 상호,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거래내용 및 금액 기재)

√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비자에 의한 신고 후 통지

·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6항 전단).

· 통보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다음의 기한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6항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제1항).

구분	내용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산세 = A × BC × 100분의 1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제외) B: 미가입기간(「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함)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함)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 ※ 다만,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제외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100분의 5 ※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으로 함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100분의 10

※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3항).

※ 세탁소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질문) 세탁소를 자주 이용해 꽤 돈이 많이 나오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해도 세탁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라며 발행해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세탁소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관련사실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거부를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발급거부(미발급)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탈퇴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5항 전단).

> ※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
> 가입기준
>
> ·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
> ·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용카드 가맹은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3.3.3. 부가가치세의 납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 사업자인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대상

▪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과세기간

▪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일반과세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

▪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적용을 함께 신고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 본문).

간이과세의 적용기간

▪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전단 및 제72조제1항).

√ 납부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구 분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
3. 숙박업	25 %
4. 건설업, 운수 및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 신고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 그 밖의 참고 사항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1.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1년간의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63조부터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 2번에 해당되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전년도 매출액 8,000만원 기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국세청(www.nts.go.kr) ㅡ 국세정책/제도 ㅡ 사업자등록 안내 – 자주묻는 질문 답변 >

부가가치세의 납부

납부세액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전단).

확정신고 및 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 ※ 부가가치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국세청(www.nts.go.kr) – 부가가치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세탁소 폐업

4.1. 폐업신고

4.1.1. 폐업신고절차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 세탁소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위와 같은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전단).

▪ 또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송부받은 경우에는 위의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폐업신고

▪ 세탁소 영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서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 사항

▪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 폐업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세청-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휴·폐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세금의 완납

부가가치세의 완납

▪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

- 세탁소 영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본문).
- 세탁소 영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 소득세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다음 연도 5월에 신고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세탁소운영-세금의 납부-종합소득세의 납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의 폐업절차]

(질문) 세탁소를 하다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첫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폐업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폐업과 관련해 소득세 확정신고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자주묻는 질문 답변 >

[폐업 후 세탁물 처리]

(질문) 세탁소를 하다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세탁소 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는 ①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②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③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세탁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9호, 2002. 12. 5. 발령·시행) 제10조].

따라서, 폐업이 결정되면 최대한의 기간을 설정하여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도록 공지하고, 찾아가는 고객에게는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해 가지 않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추후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세탁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4항),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